

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-16호

주민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(안)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2년 8월 12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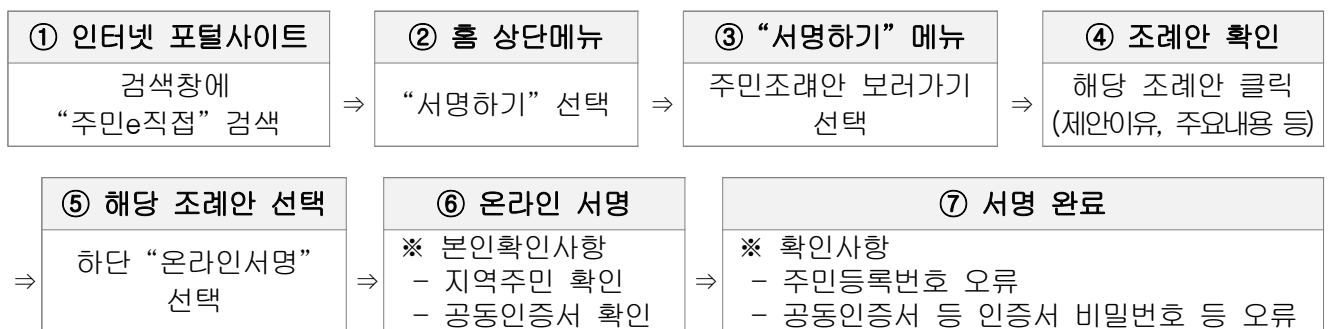
안성시의회의장

1. 제정청구 조례명: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
2. 청구인 대표자: 이상영(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)
김사옥(안성시 양성면 염티길)
장호균(안성시 석정2길)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: 2022. 8. 12.
4. 서명요청 기간: 2022. 8. 16.(화) ~ 2022. 11. 15.(화)
5. 연서 주민수: 2,328명 이상
※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(2022.1.7. 공표/ 안성시 공고 제2022-84호)
6. 청구 취지 및 이유
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2021년 9월 24일 제정, 2022년 3월 25일 시행)에 따라 안성시 유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「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」 제정을 청구(기후위기안성 비상행동 및 소속 단체-시민안)
7. 주요내용
가. 목적, 정의, 기본원칙, 시장의 책무, 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,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(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)
나. 다른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7조)
다.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규정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- 라.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규정(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)
- 마.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 규정(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)
- 바. 온실가스 감축 시책 규정(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)
- 사. 기후위기 적응 시책 규정(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)
- 아.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·시행,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, 지원센터의 설립 규정(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)
- 자. 녹색경제·녹색일자리의 육성·지원,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,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,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,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 등 규정(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)
- 차.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,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(안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)
- 카.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(안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)
- 타.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, 시행규칙 규정(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)

8. 전자서명 절차 안내

- 개인용 공동인증서(은행/보험용, 범용) 준비
-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: www.juminegov.go.kr
- 전자서명 방법



- 전자서명 취소 방법

마이페이지 ⇒ 나의서명 현황 “서명취소” 선택 ⇒ 서명 취소 조례안 선택 ⇒ 공인인증 후 취소

9. 문의

- 그 밖에 본 공고(공표)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의회 의사팀(☎ 031-678-327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조례안 1부. 끝.